

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

제정	:	2003. 10. 1.
개정	:	2004. 4. 1.
개정	:	2008. 4. 15.
개정	:	2011. 4. 26.
개정	:	2014. 3. 1.
개정	:	2021. 9. 15.
개정	:	2021. 10. 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기획관리처장, 교학지원처장,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정관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학술연구 및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대외협력, 연구기획 및 지원, 산학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,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술연구 및 산학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.

제6조(전문위원회) 학술연구 및 산학협력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산학협력중점교수)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 창업·취업 지원, 다양한 산학연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은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하되, 최대 계약기간과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③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절차와 방식 및 재임용 평가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④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.

1. 고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
2.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3. 산학협력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
4. 기타 고용계약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

제8조(특임교수) ① 산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학협력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, 산학협력단에 특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특임교수는 외부 산학협력 전문가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특임교수는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의하여 자문·특별강의·관련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회계)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‘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’ 및 ‘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’을 준용한다.

제10조(규정변경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11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조(운영위원회)는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